

2023 쌀가루(가루쌀) 제품개발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공고

< 사업배경 >

- ▶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이행계획(농식품부, '22.6)*에 따라 식품업계의 가루쌀 이용 시제품 개발·사업화 연구 지원

* 27년까지 ① 쌀가루 20만톤으로 연간 밀가루 수요 10% 대체 / ② 밀 식량자급률 0.8→8.0%↑

- ▶ 가루쌀 활용 쌀가루 제품개발 등 기업 참여를 통해 쌀가루산업 경쟁력 필요

※ 가루쌀은 가공용으로 개발된 쌀 종류로서, 일반 쌀과 달리 전분 구조가 밀처럼 둥글고 성글게 배열, 가루쌀 중 바로미2 품종 중심으로 주로 재배 중('22. 95ha)

1. 사업대상자

□ 사업대상자

-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 「농어업경영체법」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**농업경영체***로 등록된 '농업인 및 농업법인'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

* 근거 규정 :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 제6호

- 생산자단체 등에 해당하는 자로 「농업식품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근거한 **생산자단체, 농업인의 공동조직,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**
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6조에 근거하여 **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·가공·제조·조리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**

■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 상 아래에 해당하는 업으로 등록을 완료한 기업

- 곡물 도정업(10611), · 곡물 제분업(10612), ·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(10613),
-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(10619), · 떡류 제조업(10711), · 빵류 제조업(10712),
-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(10713), · 면류,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(10730)
- 이외 기타 사업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식품제조업 가능

□ 지원자격

- ① 가루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을 희망하는 쌀 가공업체
- ② 가루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, 밀가루 제품 일부를 가루쌀로 대체·혼합하여 제품 생산을 희망하는 밀가루 가공업체*

* 밀가루를 원료로 가공품을 생산하고 유통·판매하는 업체

** 밀가루·쌀가루 사용실적(원곡 임가공실적 및 가루매입실적에 대해 2021년/2022년 2개년도 평균치)이 100톤 이상인 업체로 제한

□ 참여제한

- 사업자 선정일 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(융자 및 보조) 지원제한 대상업체
- 가루쌀 제품 연구개발 등 유사 사업 선정업체(소비판로 지원사업 등)

2. 지원내용

□ 지원내용

- 쌀가루(가루쌀) 제품화에 필요한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 - 제품개발에 필요한 원료 구입, 연구개발, 시제품 브랜드·포장재 개발, 시제품 홍보비 등 정규 제품화 전 단계에 해당하는 비용

□ 지원기준 및 지원규모

- 1개 제품군당 최대 **160백만원** 국비 지원(국비지원 80%이내, 자부담 20%이상)
- 희망 수요에 따라 가공업체당 **1개 이상 제품군*** 개발
 - 최소 1개 제품군 이상이며, 실 제품 개수는 제한없음
 - * 제품군은 한국표준산업분류(분류코드 5자리)에 따르며, 가공하지 않은 자연산물 및 단일 자연산물의 특성이 크게 변하지 않을 정도로 가공 처리한 것(단순 쌀가루 등) 등은 제외
- 업체별 지원한도액 : **320백만원** (2개 이상 제품군 개발 시)

□ 지원항목

- 지원사업자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자사 여건에 맞는 예산항목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운용
 - 단,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단일 항목에서 총 사업비의 50% 초과 지원불가

<세부 지원항목 및 예산비중(단위 : 백만원)>

항 목	세부 산출 내역	비중
원재료비	쌀, 기타 부재료 구입, 가공(제분 등) 등	17.5%
제품개발비	외부 기술도입, 실험연구 의뢰, 실험설비 임차, 인건비(간접고용) 등	10%
포장 패키지 제작	포장디자인, 내외장 포장재 생산, 제품 형태 개발 등	30%
홍보·마케팅비	신제품 홍보, 유통업체 마케팅, 홍보 인력 인건비 등	35%
기타 운영비	설비 임차, 특허등록 인증비 등	7.5%
	합 계	100%

* 업체별 세부 계획에 따라 제품군당 총 예산액은 100~200백만원(자부담 20~40) 차등 배정

3. 신청방법

□ 사업자 신청접수

- 신청기간 : 신청공고일로부터 3주 ('23.1.16~ 2.3)
-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(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 이메일 제출)
 - 제출처 :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량공급팀 hwe120121@at.or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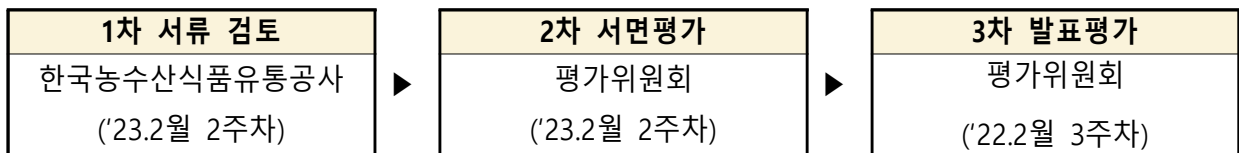
구 분	제 출 서 류
필 수	① 공문서 및 사업신청서 1부. ② 사업자등록증 1부. ③ '23년 쌀가루(가루쌀) 제품개발 사업계획서 1부. ④ '23년 쌀가루(가루쌀) 제품개발 예산사용계획서 1부. ⑤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: 감사보고서,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 원본 ⑥ 쌀가루(일반,가루쌀 포함) 및 밀가루 합산 매입실적('21년, '22년 2개년차) * 합산실적이 2개년 평균 100톤 미만 시 신청불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⑥-1. 쌀 및 밀 임가공실적(임가공계약서+대금증빙) • ⑥-2. 쌀가루(일반,가루쌀 포함) 및 밀가루 매입실적(계약서+대금증빙) * 대금증빙 : 세금계산서+송금증, 거래내역서+송금증, 카드영수증 등 ⑦ 쌀가루(가루쌀) 제품화 원료 매입 및 공동제분 동의서 1부.
해당시	⑧ 기타 평가에 도움이 되는 제반서류 (제출양식 별도 없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⑧-1. 개발희망 식품의 유망성/사업성 등 시장조사결과 • ⑧-2. 개발연구소 운영현황 및 개발인력 이력서 등 • ⑧-3. 기보유한 판매·유통채널 현황, 생산량, 매출 등 증빙 • ⑧-4. 개발희망 식품의 쌀가루(가루쌀) 샘플테스트 결과 등 • ⑧-5. 예산계획의 적정성을 증명할 견적서 등 • ⑧-6. 회사소개서 및 제조제품 소개서(브로셔 등 양식없음)

4. 사업자 선정절차

□ 선정절차

- 신청업체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예산사용계획서 등을 토대로 서류 검토 및 1차 서면, 2차 발표 평가로 최종 선정
 - ① 사전 서류 검토는 지원대상 적격여부, 계량평가 등 진행(aT)
 - ② 1차 서면평가는 제출서류 근거 별도 구성한 평가위원회*에서 진행
 - 최종 선정규모 2배수 수준에서 고득점순 선정하되,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2차 평가대상에서 선정 제외
 - ③ 2차 발표 평가*는 업체 발표(5분), 인터뷰(10)로 대면 평가하되, 서면평가를 시행한 동일 평가위원회에서 진행
 - 업체 예산사용계획에 따라 예산 규모 내에서 최종 사업자 선정
- * 중도포기·예산삭감조정 등 감안하여 예비사업자 선정(위원회에서 선정규모 결정)

< 선정절차 >



□ 선정기준

- 계량평가(20점) : 연간 쌀가루/밀가루 사용규모 및 재무건전성
- 서면평가 : 계량평가(20점) + 비계량 평가(80점)
 - 사업성, 사업준비성, 개발 및 유통 역량, 원료 사용규모 등
- 발표평가 : 비계량 평가(100점)
 - 서면평가와 동일한 비계량 평가항목으로 구성

□ 선정발표

-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개별통보(’23년 2월 말)

※ **사업 문의처** : aT식량공급팀(061-931-0775, hwe120121@at.or.kr)
카카오톡문의(아이디 : Q&Apowerrice) / 운영 : 1.16~1.20, 10:00~16:00

□ 평가항목 및 배점

○ 계량평가(20점)

구 분		평 가 항 목					배점
계량 평가	원 료 사 용 량 (밀가루/쌀가루)	상위 20%이상		20%미만~50%이상		50%미만	10
		10		8		6	
	재 무 건 전 성 (자기자본비율*)	50% 이상	30~50% 미만	20~30% 미만	20% 미만	10% 미만	10
		10	8	6	4	2	
계량평가 점수 총계							20

* (원료사용량) 2개년도 밀가루/쌀가루 사용량 전체의 평균을 기준으로 전체 신청업체수에서 상위 20%, 50%, 50%미만으로 업체수를 나눠 점수 부여

(예 : 신청업체수 17개/20%=3.4개는 3개사로 10점 부여/소수점이하 절사)

* (재무건전성) 자기자본비율(%) * 자본총계/자산총계*100

○ 비계량 평가(서면 80점, 발표 100점)

구 분		평 가 항 목	서면 배	발표 점
정성 평가	제 품 업 군 성	- 기 쌀가루 제품과의 차별성(프리미엄, 유망성, 등) - 사업목적에 부합한 쌀가루(가루쌀) 개발컨셉 등 - 제품화 시 대중성 및 사업화 가능성	20	30
	개 발 기 술 성 연 구 여 건 개 발 역 량	- 제품개발 인력 및 제품개발 연구소 보유 여부 등 - 업체에서 보유한 생산설비, 생산공장, 투자여건 등 - 제품화 실현 시 생산계획 등	20	20
	생 산 판 매 실 적 보 유 유통 채널	- 기존 제품의 전문성, 생산량, 매출현황 등 - 거래중인 유통망(온, 오프라인 포함) - 제품화 이후 향후 유통계획	10	10
	사 전 준 비 성 시 장 조 사 여 부	- 사전 샘플테스트, 기획 및 동향 파악 수준 - 기존 쌀가루(가루쌀) 경험 및 노하우	10	10
	원 료 사 용 규 모 및 사 용 계 획	- 업체의 쌀가루/밀가루 등 연간 사용규모를 고려한 제품화 진행 후 쌀가루(가루쌀) 사용규모 등 전망 - 제품 생산 시 원료곡 확보방안 등 구체성	10	10
	예 산 계 획 적 정 성	-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- 사업비 세부 산출 기준 적정성 및 견적서 등 타당성	10	20
비계량 평가 점수 총계			80	100

[참고 1] 상세 지원항목 및 정산기준

□ 지원항목

지원항목			항목 설명
기본	예산 비중	상세	
원재료비	17.5 %	원료구입	○ 제품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원료 구입비 ○ 제품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그 외 원료 구입비
		부대비용	○ 제품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원곡 제분·보관·운송비 등
제품개발	10%	외부기술 도입	○ 자사가 아닌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이전 및 실험연구비 ※ 자체 연구소를 통해 제품개발 시에는 별도 지원은 없음
		설비임차	○ 연구 등에 필요한 실험설비 임차 (구입비 인정 불가)
		개발인력	○ 사업기간에 한정하여 본 사업을 위한 신규 개발인력 고용비
		교육·컨설팅	○ 제품개발에 필요한 외부기관 교육 및 컨설팅
포장패키지	30%	포장디자인	○ 동 사업 제품에 소요되는 포장디자인 위탁용역비 ※ 자체 인력을 통한 디자인 시에는 별도 지원은 없음
		포장재 생산	○ 동 사업 제품에 소요되는 내·외부 포장재 생산비
		시제품 생산	○ 제품성형 등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임대(사업 기간) ○ 시제품 위탁 제작 ※ 시제품 생산과 관련 자본적 성격의 경비는 지원 불가
홍보 마케팅	35%	시제품 테스트	○ (필수 진행사항) 소비자 대상 시식 및 맛 평가
		홍보	○ 제품에 대한 매체 온·오프라인 광고 홍보
		판로개척	○ 온·오프라인 유통매장 판촉비(입점 수수료, 임차비 등)
기타 운영	7.5%	지적재산권	○ 개발제품의 특허/실용실안의 국내 출원
		기타	○ 사업에 소요되는 설비임차 등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제반사항 제안하여 aT검토 후 승인

□ 기본 정산기준

- 동 사업기간 중 실지출한 금액에 한하며, 사업결과 및 외부증빙 (세금계산서, 입금증, 카드영수증 등) 제출 요
- ‘기본’ 지원항목에서 총 사업집행금액의 50%를 초과 지원불가
- 식대, 교통비, 숙박, 사무용품 구입, 공과금 등 잡비성 경비 지원불가
- 상세 정산기준은 업체별 예산사용계획서를 참고하여 별도 정산지침 공지

< 사전숙지안내문 >

가. 쌀가루(가루쌀) 제품화 공동원료 공급안내

- 쌀가루(가루쌀) 제품개발 지원사업의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한 '가루쌀 물량은 '21년산~'22년산 총 49톤 수준(현미 기준)이며, 제품군당 3톤 내외 할당 예정으로 사업자가 매입함을 원칙으로 함
- 다만, 「밀제분기 사용 쌀가루(가루쌀)」를 원료로 한 제품개발이 사업이행조건으로 동 제품개발용 공동원료를 참여사업자가 구매함
- 동 사업의 원료곡의 매입-제분-인수 등의 절차 및 비용 정산 방법은 최종 사업자 선정 후 추후 공지

※ 사업 신청 시 제품개발용 공동원료 사용 동의서 제출 요

나. 사업실적 제출안내

- 동 사업은 쌀가루(가루쌀) 제품개발 결과 및 시장에서의 반응도를 성과로 관리함에 따라, 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의무사항으로 제출 요
 - ① (제품개발 결과) 제품 및 제품군별 쌀가루(가루쌀)의 가공적성, 쌀가루(가루쌀) 사용비중 및 사용량 등 개발된 전 제품 제출
 - ② (마켓테스트 결과) 제품군 또는 제품별 소비자 테스트 결과 제출
- * 공개가능한 정보에 한해 가루쌀 제품홍보 등 대·내외 활용

다. 총 사업기간

- 총 사업기간 : '23년 2월 ~ 10월(최대 9개월) 내 * 업체별 기간 설정
 - 제품개발 착수시기 : '23년 2월 ~ 4월 이내 (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)
 - 제품개발 완료시기 : '23년 10월 이내 (마켓테스트까지 종료 포함)
- * 사업 조기완수 시 조기종료 가능

라. 사업비 집행방법

- 동 사업은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을 통한 예치형 사업으로 예산 선 교부 후 사업기간동안 사업자는 집행분 발생시마다 국고(80%)로 사용 가능
- 다만, 국비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 제출 요